#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01 발의연월일: 2024. 11. 12.

발 의 자:박 정·박상혁·유동수

송옥주 · 김영환 · 정성호

정동영 • 김주영 • 김성원

김성회 · 황정아 · 김용태

이양수 • 배준영 • 이기헌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,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7호의2 신설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50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접경지역지원기금 사업의 지원

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8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| 제8조(기금의 용도)             |
|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용도에 사용한다.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7. (생 략)      | 1. ~ 7. (현행과 같음)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u>7의2.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</u> |
|                    | 법」에 따른 접경지역지원기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금 사업의 지원                |
| 8. (생 략)           | 8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|